

June 02,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37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5. 25. ~ 5. 29.)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1]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부여

2020. 5. 25. 적합성 인증(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 부여)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에 부여하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 ①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 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 진행, ②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인증을 부여받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 ③ 금년 하반기 중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 마련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산자부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서비스 개시

2020. 5. 27.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www.factoryon.go.kr) 서비스를 개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공장 부지 선정을 위한 토지 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제공, ②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지자체 담당자가 인허가 업무 처리시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하는 것 포함)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식약처] HACCP 교육 및 인증신청 절차 완화

2020. 5. 26.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의 규제를 개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식품 HACCP 신규 인증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②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시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 ③ 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신고사항을 중요관리점과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제도, 영업자 부담 줄인다



[방통위] 2020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

2020. 5. 27.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이용자 규모 및 민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하되,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가입자 수 대비 민원비율 0.5% 이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 ②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월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4개사의 6개 서비스와 인앱 결제 등 다른 통신서비스 민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앱마켓 4개사 등 1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국토부1]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2020. 5. 27.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함. 주요 내용으로 ①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야주택은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적용, 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제도 도입 추진,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 등이 있음

[참고자료]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국토부2]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 5. 27.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 7.까지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항목과 과징금 부과시 적용하는 가중 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 신설, ② 과징금액의 가중 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③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 위반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요건’ 삭제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문체부] 코로나19피해 스포츠 산업에 약 400억원 추가 지원 발표

2020. 5. 2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함. 주요 내용으로 ① 상반기 중 국회 추경심의를 거쳐 7월부터 200억 원 용자 지원, ② 비대면 스포츠 시장 확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기반 사업 재설계 등에 55억 원 지원, ③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120억 원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추가 지원대책 시행



***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 방안**

분야	내용
자동차 부품산업	- 완성차(200억원), 정부(200억원), 지자체(약50억원) 공동출연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보증 신설(5,000억원 규모, 신·기보) - 시장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규모 대폭 확대(5,500→11,000대) - 대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중소 부품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상생협력 플랫폼」 모델 확산 추진 등
중형 조선산업	- 어업지도선, 수산과학조사선, 순찰선 등 노후 관공선 6척 연내 조기발주 - 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 연내 조기발주 추진 - 인도 지연,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의 제작금융 지원 기간을 실제 선박 인도시까지로 만기 연장 등
섬유·의류 산업	- 공공부문 섬유·의류(경찰청, 소방청 등 단체복) 구매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반기 90% 목표) - 창업·벤처 코로나19 특례보증(4,000억원)을 활용하여 섬유·의류분야 창업·벤처기업에게 기술보증 공급 - 섬유·의류 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1년간('20.7~'21.6월)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세정 부담 완화 등
전시 산업	- 연기된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부스 참가비를 기업 당 60만원 지원 -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1.4조원(국비·지방비+민자)을 투자하여 총 10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 - 대규모 전시회 수요에 대응하여 국비·지방비+민자 재원으로 도심 외곽형 대형 전시장 건립(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스포츠 산업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피해를 입은 업체 지원을 위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122억원) - 국내 개최예정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각 종목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구입비·방역소독비(숙소 및 경기장 방역) 등 지원 -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창출 지원(+55억원)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0707호)]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새롭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 등이 먼지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우 면제받는 부과금의 범위는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0713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서 하여금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게 하고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3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정비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비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0719호)]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5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 및 임원의 기준 등 세부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에 투자한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제868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절차 및 방법과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제390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상당한 조사를 했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1호, 2020. 5. 26. 공포, 5.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급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8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인 안전지대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하여 확대하고자 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9호)]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기준이 전자상거래 시장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 기준의 기산시점 등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 면제 기준을 명확화 및 완화 하고자 함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